

# (사)대한지리학회-(주)오썸피아 산학연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

(사)대한지리학회와 (주)오썸피아는 지리학 기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동연구, 인력양성 등의 산학연협력 활성화, 디지털 지역교육혁신체계 구축·운영, 지역발전, 기업의 혁신성장 등을 위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의 특성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산학연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원칙)** ①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량과 경험을 공유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을 준수하며 호혜적 협력관계를 준수한다.  
② 본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이 필요하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의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3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본 협약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며 구체적인 수행 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1. 지리학 기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2. 지리학 전공자들을 위한 디지털 기술교육 및 취·창업 관련 교육 지원
3. 지역의 디지털 전환 교육에 필요한 디지털 지역교육혁신체계 구축·운영
4. 지역균형발전, 지역소멸 위기 대응, 지역의 혁신성장 등 지역발전
5. 메타버스 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 관련 기업의 혁신 성장
6. 기타 양 기관이 협력을 위하여 공동으로 결정한 분야

**제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각 기관은 협력사항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세부 업무 협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신의성실)** 각 기관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협력한다.



제6조(협약효력 및 유효기간)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있으며, 협약의 효력은 협약기관 대표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기간 만료일 이전에 양 기관이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양 기관은 일방의 비협력 등의 사유로 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이 협약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이 협약이 기간 만료, 해제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같다.

제9조(지적재산권) 이 협약에 의거하여 수행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개별 연구협정 내용에 따른다.

제10조(법적구속력) 이 협약은 제8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2월 6일



1945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회장

정 성 훈



(주)오범피아

CEO · 대표이사

민 문 호